

# 답변서

사 건 2026가소101317 임금

원 고 황인엽

피 고 김광석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5. 10. 1.부터 2026. 1. 15.까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케이엔엘(이하 'KN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하이퐁에서 근무하였으며, KNL이 2025년 12월 분 임금 6,000,000원 및 2026. 1. 1.부터 2026. 1. 15.까지의 임금 2,901,000원 합계 8,90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① 파견계약직 근로계약서(갑 제1호증), ② 업무지시 카카오톡 1, 2(갑 제2, 3호증), ③ 은행거래내역서(갑 제4호증), ④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습니다.

### 3. 피고의 기본 입장

피고는 원고의 위 주장을 전부 부인합니다. 피고 및 KNL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습니다. 원고는 피고 및 KNL이 아닌 베트남 법인 K&L VN CO., LTD(이하 'KLVN')와 계약을 체결하고 KLVN의 베트남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입니다.

#### 4. 원고 주장 및 증거에 대한 구체적 반박

##### 가. KNL과 KLVN은 독립된 별개의 법인

KNL은 2024. 8. 31. KLVN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KLVN에 100,000달러를 투자하여 KLVN 지분 20%를 취득한 투자자에 불과합니다(을 제1호증). KLVN은 베트남 현지에 설립된 유한회사로서 KNL과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이며, 양사는 상호 협력관계 및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을 뿐입니다.

따라서 KNL이 KLVN의 투자자라는 사정만으로 KNL 또는 피고가 KLVN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나.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는 KLVN이고 피고 및 KNL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누가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④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⑤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⑥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KLVN의 베트남 하이퐁 사업장에서 KLVN의 사업(OQC/GIB/복합기 라인 설치 및 Setup, LGD 관련 공사 등)을 위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업무 지시 및 관리의 실질적 주체는 KLVN의 대표자 록(TOHUU LOC) 사장이었으며, 피고 및 KNL은 원고에 대하여 업무 내용을 정하거나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히 원고 황인엽은 KLVN의 록 사장이 직접 채용한 인원으로, KNL 및 피고와는 채용 과정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KLVN 록 사장이 황인엽을 고용하면서 “설계 1명 23일 같이 오는데 MD(하루임금) 20만원 해달라. 월600이네요”라고 한 대화 내용이 이를 뒷받침합니다(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따라서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는 KLVN이고, 피고 및 KNL은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사용자성 판단 요소를 검토하면, 모든 요소에서 KLVN이 실질적 사용자임이 확인됩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에서의 실질                           |
|------------------|--------------------------------------|
| 채용 주체            | KLVN의 록 사장이 직접 채용                    |
| 업무 내용 결정 및 지휘·감독 | KLVN의 록 사장이 실질적 업무 지시권 보유            |
| 근무 장소            | KLVN의 베트남 하이퐁 사업장                    |
| 수행 업무            | KLVN이 GIS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             |
| 급여 자원            | KLVN이 급여 자원 제공                       |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KNL이 원천징수한 사실 없음                     |
| 피고의 지위           | KLVN에 고용된 근로자(OQC/GIB 전장/제어 총괄역)에 불과 |

## 다. 갑 제1호증 파견계약직 근로계약서의 성립 및 효력 부인

### 1) 작성 경위 —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허위증빙 목적

원고는 록 사장과의 고용계약후 2025. 9. 23.경 베트남에 도착하였습니다. 피고 또한 당시 KLVN에서 함께 일하기로 하였기에 같은 날 록 사장의 소개로 원고와 처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록 사장은 원고에게 “KLVN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베트남 노동허가서가 없어서 KLVN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 어렵다.”, “김광석씨 회사(KNL)로 송금하면 전달받는 것으로 하자” 고 하였고, 피고에게는 “부탁한다” 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알겠다”, “늦지 않게만 해달라” 고 하였고, 피고는 “KLVN에서 지급받는데로 송금해주겠다” 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한국회사의 대표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베트남 KLVN에서 쉬는 시간에 피고에게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취업했다는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고 하였고, 피고는 처음에는 “록 사장에게 받으면 되지 않냐” 며 거절하였습디만, 원고는 KLVN이 사업자등록증과 베트남 노동허가서가 없어서 곤란하다며 피고에게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동급 중간관리자로서 협업하며 일해야 하는 처지에 마냥 거절할 수 없어 프리랜서이기에 ‘단기계약 발주서’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발주서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다는 여러 차례 부탁하였고, 피고는 고민을 하다가 파견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습니다(을 제5호증). 갑 제1호증의 작성경위는 피고가 처음 보낸 문서가 “단기계약 발주서”였던 점과 을 제5호증 전체내용에서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실

업급여 수령을 위한 허위 증빙 목적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원고는 2025. 10. 1. 피고에게 “실업급여를 위해 필요하다” 면서 처음에는 “사업자등록증” 을,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 형식으로”, 세 번째는 “재직증명서” 로 요청하였습니다. 2025. 10. 2.에도 “한국 도착했습니다 재직증명서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가능하시겠습니까?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한 것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을 제5호증).

## 2) 미완성 문서 — 원고의 날인 전 철회

KNL 명의의 날인까지는 진행되었으나, 원고의 날인 전에 철회되었습니다. 갑 제1호증 계약서 3면을 보면, “(을)근로자: 황 인엽(인)” 란에 원고의 날인이 없고,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 의 성명(인) 란도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위 계약서가 미완성 상태임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로계약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의사 합치를 요하는 낙성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원고의 날인이 없는 이 사건 계약서는 계약 성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완성 문서에 불과합니다.

## 3)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설령 위 계약서가 형식적으로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허위 증빙 목적으로 요청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는 민법 제108조 제1항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 4) 계약서 기재 내용의 불일치

갑 제1호증 계약서에는 근무장소가 “베트남 하이퐁 KLVN 파견” 으로 기재되어 있고, 담당업무는 “기구설계/기구조립” 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원고가 KNL이 아닌 KLVN의 사업장에서 KLVN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계약서 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월급여액 4,500,000원은 원고가 청구하는 월 6,000,000원보다도 일치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 자체에 내적 모순이 있습니다.

#### 라. 원고는 프리랜서 계약을 희망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의사가 없었음

원고 황인엽은 KLVN의 록 사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자로서, GIS-KLVN 간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부터 KLVN의 베트남 사업장에서 근무할 준비를 하고 있던 자입니다.

원고와 록 사장 사이의 대화 내용(을 제3호증)을 보면, 원고는 “일단 3개월정도 해보고싶다 직원으로 아니고 free로 직원으로하면 비용 부담 넘 커서” 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을 제3호증). 이는 원고 스스로 고용계약이 아닌 프리랜서(용역) 계약을 희망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원고에게 KNL 또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합니다.

#### 마. 갑 제2, 3호증 업무지시 카카오톡에 대한 반박

##### 1) 갑 제2호증에 대한 반박

갑 제2호증의 카카오톡은 원고가 2025. 12. 10. 본인의 실수로 발주를 잘못하여 원청(GIS 김시진)이 황인엽의 실수로 구매한 제품을 반납하여야 하니 챙겨서 보내달라고 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기-붙여넣기로 다시 한번 전달한 것입니다(을 제6호증).

피고의 “네(노란색)” 답변은 업무지시가 아니라 그 바로 위 “간략히 미팅할게요”에 대한 답변이며, 물건을 챙겨서 주고받는 것은 황인엽과 GIS 김시진이 서로 대화한 내용입니다. 피고가 GIS에서 독촉이 있었고 황인엽이 잊어버린 것 같아 개인 카카오톡 메신저로 한 번 더 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는 업무지시가 아닙니다.

## 2) 갑 제3호증에 대한 반박

갑 제3호증의 카카오톡은 원청 GIS에서 요청하여 PDF 파일(을 제7호증)을 보냈는데 내용을 알 수 없어 설계파트 선임을 담당하고 있던 원고에게 원본 파일을 부탁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내용조차 별도의 작업을 요청한 게 아니고, 담당 파트의 파일만 달라고 한 것입니다. 복합기 LAYOUT.dwg 파일이 원본이고 이 파일을 Autocad 프로그램으로 열어서 프린트를 하면 이미지가 프린트 되는, 원고가 그와 같은 프린트 작업을 모르는 것 같아서 원본 파일만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구체적·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이 아닙니다(을 제7호증).

## 3) 피고의 지위

피고는 카카오톡에서 “한국법인장님”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가 KNL의 대표이사로서 KLVN과의 협력관계에서 업무 연락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피고 김광석 본인도 KLVN에 고용된 근로자(OQC/GIB 전장/제어 총괄역)로서 KLVN으로부터 급여명세서를 수령하고 KLVN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KLVN의 근로자로서 현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업무 관련 연락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KLVN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원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휘·감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 KNL의 금원 지급은 KLVN을 위한 제3자 대행 지급에 불과함



## 1) 대행 지급의 경위

2025. 9. 23. KLVN 사무실에서 황인엽, KLVN 록 사장, 김광석 3명이 급여지급에 대한 미팅을 하였고, KLVN 록 사장이 황인엽에게 “급여지급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베트남 노동허가서가 없어서 베트남 회사에서 지급하기 힘들다. 한국 KNL 김광석에게 송금하면 김광석이 황인엽에게 전달하겠다” 고 말하였으며, 황인엽은 알겠다고 하고 김광석은 “KLVN에서 지급받는 대로 송금해주겠다” 고 하였습니다. 이는 KNL의 금원 지급이 KLVN의 급여 재원을 이용한 대행 지급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제로 KNL은 2025. 11. 1. 황인엽의 10월 급여 5,802,000원을 KLVN의 급여 재원(GIS 정산금)으로 대지급하였고, 2025. 12. 13. 황인엽의 11월 급여도 KLVN의 급여 재원(NPS 정산금, GIS 정산금)으로 대지급하였습니다. 이는 KLVN이 급여 재원을 제공하고 KNL이 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합니다.

## 2) 민법상 제3자 변제 및 구상관계

민법 제469조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습니다. KNL이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KLVN의 임금 지급 채무를 KLVN의 요청에 따라 대행한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 변제에 해당하고, KNL은 KLVN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KNL이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은 KLVN을 대신하여 대행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두고 KNL 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3) 대지급약정의 대외적 구속력 부재

KNL과 KLVN 사이의 대지급약정은 KNL-KLVN 간 내부적인 약정에 불과한데다 호의관계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 대지급약정을 근거로



KNL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4) 임금 직접 지급 원칙과의 관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이 사건에서 KLVN이 KNL을 통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한 구조는 KLVN이 베트남 노동허가 문제로 직접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KNL을 사자(使者)로 활용한 것으로, 이는 KLVN과 원고 사이의 임금 지급 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근로자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임금을 수령할 때에만 그를 사자로 보아야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이 사건에서 KNL은 KLVN의 요청에 따라 KLVN의 급여 재원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는 KLVN의 임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자 내지 대행자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 사. 갑 제4호증 은행거래내역서에 대한 반박

원고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는 원고의 계좌로 KNL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나 위 임금 내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KLVN의 급여 재원을 이용한 대행 지급에 불과하고, 이를 KNL 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하는 12월분 및 1월분 임금은 KNL이 대행 지급한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KLVN이 해당 기간의 급여 재원을 KNL에 송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아. 갑 제5호증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의 증명력 다툼

### 1) 확인서의 법적 성격과 증명력의 한계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이 2026. 6. 10. 발급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입니다. 그런데 위 확인서의 비고란에는 “사업주는 자신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해당 근로자는 자신이 아닌 베트남 국적 법인 K&L VN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 조사” 란에는 사업주 조사 실시 여부 및 인정 여부가 명확히 체크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발급 경위 — 원고의 민사 소송 목적 요청

담당 근로감독관의 확인에 따르면, 위 확인서는 원고가 민사로 다투고 싶다고 하고 증거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발급해 준 것이고, 해당 사건은 아직 수사 중이며, 사업주(피고)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발급된 것입니다. 이는 확인서가 원고의 주장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신청에 따라 소송 제기용으로 발급된 행정 문서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 3) 민사재판에서의 증명력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서,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판단을 담은 문서에 불과하고 민사재판에서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도 구속받지 않으며,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 확인서의 비고란에 피고가 사용자성을 부인하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담당 근로감독관도 해당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며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확인서는 피고가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아닌 중간 단계의 행정 문서에 불과합니다.

## 자. 원고의 12월분 및 1월분 임금 미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

### 1) 12월분 임금

원고는 2025. 11월말 업무포기하겠다고 해당 공정 노무자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설계 파트 선임인 원고가 업무포기하면 전체 공정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피고가 KLVN 록 사장에게 보고하였고, 록 사장은 원고와 얘기를 나눈 뒤 12월말까지 업무를 보기로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12월까지(11월분)만 전달역할을 할 테니, 나머지는 직접 하라고 하였고, 원고에게도 그와 같이 전달하였습니다(을 제9호증).

이후 황인엽과 KLVN 록 사장은 임금 지급 방식과 날짜를 서로 약속한 것으로 피고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분 임금은 KLVN 록 사장이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고, 피고 및 KNL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2) 1월분 임금

2026. 1. 27. 원고가 피고에게 노동청 진정서 신청 통보를 하자, 피고가 KLVN 록 사장에게 확인한 결과 2026. 1. 20.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피고가 KLVN 록 사장에게 황인엽과 당장 통화하여 송금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언제까지 임금 지급을 이행할지 얘기하라고 하였고, 그 자리에서 KLVN 록 사장이 황인엽과 통화하여 “지금 돈이 없어서 못 보내준다. 2026. 1월 말까지 지급해주겠다” 고 약속하는

내용을 피고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이는 1월분 임금의 지급 의무자가 KLVN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2026. 1. 13.경 KLVN 록 사장이 직접 공항까지 태워주고 한국 가는 항공권도 티켓팅 해줬다고 하며, 황인엽과 KLVN 록 사장은 친구 관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KLVN 록 사장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차. 예비적 항변 — 설령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 개인은 사용자가 아님**

설령 원고와 KNL 사이에 어떠한 형태의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업주인 KNL이지 피고 개인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피고는 KNL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행위한 것일 뿐이고, 피고 개인이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카. 예비적 항변 — 실질적 근로관계 기준에 의하더라도 피고 및 KNL의 사용자성 부정**

원고는 계약 명칭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피고 및 KNL의 사용자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설령 KNL이 민원인들을 KLVN에 파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KLVN)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판결 참

조).

이 사건에서 KLVN이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업무 지시권을 행사하였고, 원고가 KLVN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근무하였으므로, 설령 파견 구조로 본다 하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는 사용사업주인 KLVN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5.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 및 KNL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파견계약직 근로계약서는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허위 증빙 목적으로 작성된 미완성 문서로서 계약 성립의 효력이 없고, 업무지시 카카오톡은 피고가 사용자로서 지휘·감독한 것이 아니라 단순 연락에 불과하며, KNL이 원고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은 KLVN을 위한 제3자 대행 지급에 불과하고,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는 피고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는 내용이 명시된 미완결 행정 문서에 불과합니다.

## 입증방법

1. 을 제1호증 합작투자계약서
2. 을 제2호증 황인엽-록 사장 고용대화(1)
3. 을 제3호증 황인엽-록 사장 고용대화(2)
4. 을 제4호증 KLVN 록 사장\_베트남\_메신저\_프로필
5. 을 제5호증 황인엽의 카카오톡(2025.10.1.~2025.10.2.)
6. 을 제6호증 황인엽-GIS김시진 카카오톡
7. 을 제7호증 복합기 LAYOUT

8. 을 제8호증 황인엽 카카오톡(근무중단)

9. 을 제9호증 황인엽과의 대화(9월분, 12월분은 록사장 직접 지급)

※ 원고가 추가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거의견을 별도로 표명하겠습니다.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2.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09645 판결

3.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19072, 219089, 219096, 219102, 219119, 219126, 219133 판결

2026. 8. .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공

담당변호사 박병언

김민석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소액1단독 귀중